언론 공정성 개념의 재개념화

언론의 자율성 논변을 중심으로

문종대·윤영태*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이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고 보편적 가치를 자기 문제화하여 보도할 때 자율적인 언론이라 하고, 이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공정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다. 언론의 자율성 논리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있을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모든 내외적 강제는 언론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이다.
자율적인 언론은 보편적 가치를 자기 의지화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이것이 언론 공정성의 충분조건이다. 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율적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며 동시에 정의롭다.
그러나 다원적인 가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가치간 우열이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차이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자율적인 언론간의 보도시각이나 가치간의 차이는 상호 논쟁과 비평의 영역은 될 수 있어도 공정성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율성 개념에 따를 때 이들은 모두 공정한 언론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 언론의 공정성, 언론의 자율성, 언론 자유

1. 서론

언론이 공정해야 한다는 규범은 현대의 거의 모든 언론이 추구하는 가치다. 대부분 언론사는 자사의 언론이 공정한 언론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

* jdmoon@deu.ac.kr

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 그런가? 공정성 개념의 불명료성 때문인가, 아니면 언론사의 언명과는 달리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저널리즘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강명구(1989, 19-51쪽)는 뉴스 공정성을 사실성, 윤리성 및 이데올로기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실성에 있어서는 정확성과 균형성, 윤리성에 있어서는 합법성과 윤리성, 이데올로기성에 있어서는 전체성과 역사성을 주된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한편 이민웅(1996, 77-123쪽)은 공정성 개념 구조를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독립성의 6개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강태영(2004)은 정확성, 질적 양적 균형성, 정보의 적절성, 종합성, 견해의 다양성, 불편부당성, 양시양비론 지양을 공정성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창현(2004)은 기존의 공정성 논의를 정리하면서 형식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성을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등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민웅(1993)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들 개념들이 왜 공정성 논란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민웅은 진실성을 정확성과 완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비록 인식의 불확실성으로 완벽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무엇이 허위인지는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념은 공정성 개념의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주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완전성 역시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이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인지, 아니면 어느 사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는지는 판단 자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적절성은 선택과 처리라는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어떤 뉴스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 역시 언론사나 언론인마다 다를 수 있고,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처리' 역시 진실성의 완전성 개념과 유사한 특성으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성의 판단을 놓고 공정성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처리'와 '완전성'의 하위개념들간에 상호 배타적인 개념관계가 설정되지 않고 다소 중복됨으로써 개념과 개념 간 상호 독립적인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논쟁적인 쟁점 또는 갈등적인 기사를 취급할 때 적용되는 균형성은 일반적인 균형과 질적인 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양적인 균형은 갈등 당사자의 주장이 대등한 가치를 가질 때 의미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갈등당사자의 주장이 대등한 가치인지 아닌지 판단 역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질적인 균형 역시 질을 판단하는 데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균형성에 집착하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중립성은 가치판단이 가장 개입하기 쉬운 영역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때, 기사를 취사선택할 때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자유이념에 충실한 사람과 평등이념에 충실한 사람 간에는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는 다양성 역시 지면이나 방송시간의 한계로 선택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다차원적 개념은 구성개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보도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들 개념 중 어떤 개념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구성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개념정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념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언론사가 공정한 관찰자로서 불편부당성의 기치를 내걸고 보도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관찰자 역시 자신의 가치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그것을 공정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공정성 개념 논의로부터 공정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유종원(1995)도 기존의 공정보도라는 개념은 공정성 그 자체 또는 몇 개의 하위개념으로 완성되는 단일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개념들과의 심층적 의미의 연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1) 경기인으로서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언론, 2) 단순한 관찰자와 기록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배심원제형 언론, 3)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력을 필요로 하는 단독 판사형 언론으로 구분하면서 언론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정성 해석이 달라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심판자로서의 언론이 공정하려면 모두가 합의한 경기 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 경기 규칙이 무엇인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아래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경기의 규칙처럼 공정한 보도에 대한 합의된 규칙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 합의된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개입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심원제형 언론은 진실 발견보다 언론플레이에 언론이 놀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단독 판사형 언론은 언론인의 인식론이나 가치론에 따라 판이한 해석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종원의 언론 공정성 판단방식에 대한 유형화는 매우 적절하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언론 역할에 대해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한 것 역시 매우 적절하지만, 세 유형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문종대(2004)와 이준웅(2004)도 언론의 공정성 논의를 검토하면서 공정성 개념의 불명료성이 공정성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종대는 매체별로 이념적인 시장 분화가 발생한 경우 이념을 달리하는 매체 간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준웅 역시 노무현 정부 이후 기존 언론의 이념적 입지와 다른 위치를 보이는 정치적 입장을 지닌 공중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지만 이런 이념적 지형의 변화를 보수적인 언론이 비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공히 공중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나 매체의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공정성 논란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공정성 논란이 발생

한 원인을 잘 분석하였지만 어떤 보도가 공정한 언론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공정성 개념으로 언론 내용을 분석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양한 가치들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도의 차이는 다원적 가치사회에서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것은 공정성 개념의 핵심이 될 수 없다. 기존의 공정성 개념은 보도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논의로서 공정한 언론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내용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가치간의 갈등을 용인할 수 있으면서 제도나 절차적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새로운 공정성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평수준의 공정성 논란에서 제도적인 수준으로 논의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자율성 개념에 기반한 언론 공정성 정의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절대 권력자의 의지가 공정성 기준의 잣대이고, 권력자의 의지와 반하는 언론이 모두 통제된다면 절대 권력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언론일 수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있다. 불공정한 언론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주장까지 통제된 사회라면, 그런 사회에서 공정성 논의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의 의지를 찬양하는 것 이상 어떤 논의도 존재할 수 없다. 절대 권력이 정한 자의적 공정성은 만인 각자가 정한 자의적 공정성 기준과 차이가 없다. 공정성 기준이 만인의 각자에 따라 모두 다르다면 공정성이라는 의미는 무의미하다. 절대 권력 개인의 공정성 기준은 일개인의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절대주의 국가에서 공정한 언론이란 존재할 수 없다.

만약 절대 권력자가 만인이 인정하는 공정한 판관이라 한다면 공정성 논의는 의미있을까? 이것 역시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절대자의 의지는 무조건 진리이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은 무조건 진리이고 공정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절대 권력자가 존재하는 곳에서 공정성 개념 자체는 의미 없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면 공정성은 무조건 보장되는가? 그렇다면 공정성 논의는 언론자유와 동등한 개념이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논의일 뿐이다. 즉, 동의 반복적인 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정한 언론이 존재할 수 없다면, 언론자유는 공정성 조건의 필요조건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공정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정한 언론을 위한 충분조건이 필요하다.

언론자유 보장이 공정성의 필요조건이라면 충분조건은 언론활동이나 언론의 보도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기존의 공정성 개념이 언론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그것이 공정한가 아니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제시되었지만,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구성됨으로써 가치들간의 상충이나 이들 중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또는 가치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정성 개념이 보도 내용분석 척도로 제시됨으로써 언론의 자유 개념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 개념은 언론자유와 언론보도를 매개하는 언론인을 분석에서 배제함으로써, 최악의 경우 공정한 언론보도를 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강제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인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자유 개념과 언론인의 공정한 언론실천,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언론보도의 공정한 결과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한데 그 개념이 언론의 자율성 개념이다.

자율성(autonomy)은 주로 자기규정 내지 자기결정의 의미로,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소극적 상태를 넘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설정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자기지배를 의미한다(임미원, 2002, 55쪽). 이런 자율성 개념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 전능함과 무기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마치 자율성이 자유와 동의어로 사용되면서 자의적인 특수성에 입각한 탈보편이 자율의 본질이자 완성으로 보고 도덕적 보편으로서의 정향성과 무관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실정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어떤 언론활동도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런

자율성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런 몰가치적 평가는 무의미하다. 즉, 실정법 내에서의 모든 자율적 행위는 정당하며, 자율적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논리는 자율인가 타율인가에 대한 평가기준 이상의 의미가 없다. 항상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은 동의 반복적인 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개념은 외적 방해가 없다는 면에서는 소극적 자유 개념과, 자기의 목적을 설정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자기지배라는 면에서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과 일치한다. 자유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면 굳이 자율성이라는 동일한 개념을 달리 사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율성은 타율인가 자율인가를 넘어서 무엇을 위한, 무엇을 가능케 하는 자율인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자율성은 보편적인 격률이 전제되었을 때만이 그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율성의 개념은 흔히 18세기 독일 철학자인 칸트와 관련된다(황경식, 1991, 78쪽). 칸트는 자율적 행위자는 욕망이나 그 외의 심리적 경향성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을 그들의 행위 준칙으로 삼는 합리적 행위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장희, 2001, 218쪽). 즉, 역사적 상황이나 주관적 욕망 또는 선호 등과 같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스스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법칙을 입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덕법칙을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부과하는 사람을 자율적인 행위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직 "자신에 의해서 주어지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그런 법칙만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의지에 따라서만 행위 하는"(Kant, 1998, p.40) 사람만이 자율적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입법자로 표현되는 칸트의 자율성 관념은 도덕적 보편성을 자기 문제화한 의지라 할 수 있다. 입법하는 의지이기에 자율적 의지는 어떤 상위의 법칙을 통해서도 강제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입법하고자 하는, 즉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이기에 이 의지는 더 이상 자기에게만 고유한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자율성이란 주관적 이해관계와 타율적 강제로부터 동시에 벗어나, 스스로가 마치 보편입법자로서 강요됨이 없이 모든

이해관계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즉, 자율성 관념을 통해 인간은 자기본성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도덕적 보편성으로의 방향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임미원, 2002, 62쪽).

칸트의 논의를 정리하면 자율적인 인간은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외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욕망이나 그 외의 심리적 경향성' 등 내적인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입법하고자 하는 자기 입법적인 의지에 따라 도덕적 보편성을 자기문제화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자율적인 행위자는 외적인 힘이나 처벌의 위협에 의해 강제됨이 없이 행위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하며, 둘째 그의 행위는 그의 합리성을 억압하거나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욕구나 충동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런 뜻에서 그는 합리적인 자유로운 선택자로 행위하고, 셋째, 그는 자신이 복종하는 법칙의 창조자요 입법자로 행동해야 한다(S. Mendus, 1989, p.58; 황경식, 1995, 607쪽)

이렇게 보면 자율성이란 한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특정한 방식이다. 즉, 개인 X가 자율적이라면 언제나 자유롭지만 X가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율적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자유는 한 개인이 자율적이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유는 각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김도균, 2002, 23-24쪽)

자율성 개념을 언론의 자율성으로 치환할 경우 언론은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언론인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자유로운 선택자로서 도덕적 보편성 내지는 객관적인 이해관계를 자기문제화하여 언론활동을 할 때 자율적인 언론이라고 개념 규정할 수 있다. 입법하는 의지이기에 자율적인 의지는 어떤 상위의 법칙을 통해서도 강제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입법하고자 하는, 즉 보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이기에 이 의지는 더 이상 자기에게만 고유한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는다(임미원, 2002, 62쪽). 따라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은 주관적 이해관계와 타율적 강제로부터 동시에 벗어나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율성 관념을 통해 비로소

언론은 자기 이익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도덕적 보편성으로의 방향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다.

자율성 개념에 기반한 언론의 자율성을 논할 때, 언론은 첫째 내외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 자율성이 결여된 언론은 자율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율적인 언론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가치를 실현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자유롭지 못한 언론이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비록 보편적 가치를 실천한다 할지라도 이런 언론을 자율적인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보편적 가치의 실현은 언론 자율성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율적인 언론, 즉 자유로운 언론이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거나 최소한 위반하지 않는 모든 언론행위는 공정한 언론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자율적인 언론은 공정한 언론이다. 자율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언론은 공정한 언론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하에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자율성에 기반한 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이 자율적일 수 있는 조건에 주목하지, 언론보도 내용에 주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율적인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내용은 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자율적인 언론이 보도하는 모든 내용은 공정한가?

3. 자율성에 기반한 언론 공정성의 필요충분 조건

1)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언론자유

맥컬럼(MacCallum G., 1991, p.102)은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수행하거나 하지 않거나, 무엇이 되거나 되지 않는 데 대한 제약, 간섭, 장애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자유란 언제나 행위자의 자유이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또는 무엇이 되거나 되지 않을 자유'라는 것이다. 맥컬럼의 정의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을 선택 가능성을 가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맥컬럼의 정의는 '장애의 부재'와 '선택가능성'이라는 중요한 자유개념을 포괄하고 있지만 자유행위의 사회적 정당성의 범위, 즉 자유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과 상충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맥컬럼의 개념 정의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자유' 개념의 본질적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개개의 자유로운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편적인 가치에 복속시키고 그 가치를 실천하거나 최소한 그 가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율성 개념에 기반하지 않는 한, 자유의 남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자유'개념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가 자율성의 필요조건인 한에 있어서 맥컬럼이 정의한 '장애의 부재' 상태는 자율성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자율성의 필요조건은 동시에 언론 공정성 실현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페인버그(Feinberg J., 1980, pp.5-6)는 자유의 장애를 적극적인 장애와 소극적인 장애, 외부적인 장애와 내부적인 장애로 나누고 있다. 적극적인 장애는 '그것이 있음으로서 개인의 작위나 부작위를 제약하는 여건'을 말하고, 소극적인 장애는 '개인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어떤 것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외부적인 장애냐 내부적인 장애냐 하는 문제는 장애요인이 행위자의 외부 세계에 속하는가 아니면 인간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특성에서 비롯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언론자유는 언론이 '장애부재 상태'하에 있을 때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장애'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더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의 내부적이고 소극적인 장애는 언론행위자의 무지, 의지의 박약, 재능 및 소질의 부족이나 결여 등 언론행위자의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특성으로부터 발생한다. 언론의 내부적이고 적극적인 장애는 편집광적인 생각이나 병적인 충동, 욕구, 탐욕 등 주관적 여건들로부터의 장애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언론행위자, 언론 윤리의식이 부족하여 외부의 유혹에 약한 언론행위자, 언론인으로서 적성이 맞지 않는 언론행위자, 정신적인 질환자 등은 내부적이고 소극적인 장애, 내부적이고 적극적인 장애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적성이 맞고 전문성이 높은 언론행위자의 충원체계 및 재교육 체계 구축, 언론윤리의식에 대한 교육과 언론윤리강령 제정 등은 이런 장애요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언론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이 없어 행동에 제약을 받을 때, 즉 언론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부족, 취재비 부족, 보도에 필요한 정보 및 시간 부족 등은 외부적이고 소극적인 장애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외부적이고 적극적인 장애는 폭력을 이용한 위협 또는 테러, 법적 강제, 취재원의 취재 방해 행위 등 언론행위자에게 외부로부터 부과된 제약여건들이라 할 수 있다. 언론이 외부로부터 간섭당하는 경우 언론은 자신의 판단이나 선택보다 타인의 결정에 의해 행위하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 능력이 없는 존재처럼 대우받게 되며, 더 이상 행위 주체의 지위를 견지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인격의 비인격화가 이루어지고, 단지 타인의 평가와 결정의 도구일 뿐 목적적 존재로서의 인격일 수가 없다. 따라서 공개 및 정보접근의 수월성을 보장하는 정보처리 및 배치, 취재원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등은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소극적 장애요인들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내·외적인 소극적 적극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언론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언론의 내·외적인 소극적,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언론자유의 또 다른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때때로 국가나 다른 기관들은 언론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우 행하게 될 바를 언론 대신 언론을 위하여 규제하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기도 한다. 자유로운 언론의 실현조건들을 대체로 잘 알고 있는 언론은 그들 자신의 비합리적인

경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처벌 책에 합의함으로써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피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를 갖고, 또한 사려 깊지 못한 행위가 가져올 불행한 결과를 당하지 않게끔 어떤 강제적 간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윤리규정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법규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에 대한 자유로운 복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적인 제도를 통한 자유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 언론 공정성의 충분조건으로서의 보편적 가치

자율성에 기반한 언론의 공정성은 내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롭고, 스스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이런 도덕법칙을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부과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의한 언론활동에 의해서 실현된다.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조건의 실현은 의미 없기 때문에 언론 공정성의 필요조건인 언론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 후 그 충분조건인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논의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것이다.

질서정연한 민주사회에서 자율성의 한 축인 언론의 내외적 강제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합의는 쉽게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율성의 또 다른 축인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덕법칙이 확정적이라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은 명료히 나누어지고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 사이의 우열관계도 분명하다. 중세 기독교적 절대주의는 진리와 정의를 독점함으로써 모든 가치의 대립을 용납하지 않았다.

중세적 관점에 따른다면 절대자가 정해놓은 규범에 맞느냐 틀리느냐가 언론 공정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틀린 것은 배척되어야 하고 절대자가 정한 진리를 거부하는 언론은 탄압되어 마땅하다. 절대자가 무오류적인 보편적 입법자인 신의 위치에 있지 않은 한 그의 보편성은 자의적일 수 있으며, 그 자의성은 자율성의 기본개념인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법칙을 위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인간이 선택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없음으로 자유조건을 위배할 수 있다.

또 다른 확정적인 도덕법칙인 공리주의 역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치극대화 논리가 기준이 된다. 개개인의 행복 양의 합을 사회행복의 총량이라고 본다면 개인의 행복 양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언론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언론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이익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공리주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지라도 국가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언론활동을 하는 것이 공정한 언론이다. 이 경우에 언론의 공정성은 국가이익이나 개인이익의 극대화와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공정성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런 공리주의 논리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이익극대화에 기반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즉, 가치극대화가 자율성보다 우위에 있어 자율성이 가치극대화와 상반되는 경우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됨으로써 자율성에 기반한 공정성 논리를 위반할 수 있다. 자율성에 기반한 언론의 공정성과 공리주의는 언제든지 상충할 수 있다.

도덕법칙이 확정적이라고 보는 확정적 가치세계와는 달리 도덕법칙이나 가치세계가 불확정적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개개인의 주관이 부여한 가치 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 가치 회의주의에 빠질 수 있다. 가치나 진리에 대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회의론은 언론의 자유지상주의를 결과한다. 개개 언론사의 주관이 부여한 가치 이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가치세계에서 본다면 특정 언론사의 가치가 다른 언론사의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확정을 할 수 없고 모두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 그렇다면 모두 가치주관주의에 빠져 가치의 보편성이 가치의 주관성으로 전도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편적 가치가 개별 언론사의 주관적 선택에 좌우되어 도덕적 무정부 상태에 빠짐으로써, 자유의 개념과 자율성의 개념 차이는 없게 된다. 진리나 가치에 대한 회의주의적 이념 속에서 자율성은 자의적이며, 언론의 공정성 역시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롤즈(Rawls, John, 1993/1998, p.187)는 민주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므로

이해의 갈등이 있고 주장이 혼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사이에는 합의를 이룬 정의에 대한 숙고된 도덕적 판단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종차별, 종교적 불관용, 노예제도 등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도덕적 판단이나 모든 시민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정치적 아이디어는 민주사회 정치문화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칸트는 '스스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법칙'에 따라 자기결정적인 사람을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했다. 롤즈는 칸트의 자율성 개념을 현대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당성 개념'으로 재구성했다,[1] 롤즈(1971/1999, p.610; 1993/1998, pp.61-62, p.98)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자기와 타인이 공통으로 추론할 수 있는 원칙에 의하여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때 합당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모든 시민들이 합당하게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적 정의관만이 공적 이성과 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지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의 원칙도 있는 반면에 부당한 불일치도 존재한다. 편견이나 자기이익 혹은 집단이익, 맹목성에 기반한 부당한 불일치의 근원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합당할 수 있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근원과는 첨예하게 대립된다(롤즈, 1993/1998, p.72). 그리고 자신의 믿음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과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누구나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주장으로, 합당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 자신을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롤즈, 1993/1998, p.77).

그러나 롤즈(1993/1998, p.49)는 질서정연한 민주정치사회[2]에서 종교적,

---

1) 상호 평등한 사람들이 협력의 공정한 조건으로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규범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때 그런 규범들은 합당한 것이 된다. 그리고 합당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이들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서로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열망하고, 각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세계 내에서 상호성이 유지될 수 있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로 가정한다(롤즈, 1993/1998, pp.61-62).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의 다양성은 민주주의 영구적 특징으로서 상호 상충하며 화해할 수 없는 포괄적인 교리들의 다양성이 발생할 것이고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합당한 개인들 사이에 합당한 불일치(Reasonable disagreement)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상적인 정치적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능력의 올바른 행사에 관계된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당하고 합리적인 존재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판단을 내릴 때가 많기 때문에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롤즈의 논리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다원적 가치사회에서 합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이다. 서로 다른 세계관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합당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양성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독특한 관점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당수의 판단들은 충분한 이성의 능력을 갖춘 양심적인 개인이 자유로운 토론 후에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합당한 불일치 영역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언론의 사건구성이 다른 가치와 상충한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율성 개념은 거짓이나 허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에 대한 허구나 거짓은 이미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위나 거짓에 기반한 언론보도는 이미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공정성 개념 중 진실성 개념을 포함한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간의 차이로 인한 논점의 차이는 공정성 논란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의 판단이 타자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판단할 수

2) 롤즈(1993/1998, p.44)가 사회가 질서정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1)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회, 2) 그것의 기본구조-사회적 정치적 제도들과 이 제도들이 어떻게 하나의 협력적 체계로서 결합되는가는 이러한 원칙들을 만족시킨다고 공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 3) 이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기본제도에 일반적으로 순응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정의관은 하나의 공유된 관점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 관점에 의하여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주장이 조정될 수 있다.

없거나 타자의 견해가 명백히 틀린 것으로 밝힐 수 없다면 자신의 견해가 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사르트르(Jean-Paul Sartre, 1956, pp.295-298)는 한 학생이 '나라를 위해서 레지스탕스에 들어가야겠는가, 자기가 없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를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는가'라는 자문을 구하러 왔을 때, '너는 자유이다. 네가 선택하라'라고 말했다. 대립되는 두 가치가 서로 비교 불가능하므로 네 스스로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쉽지 않게 대립되는 가치의 우열이 확정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립되는 가치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가치간의 갈등이 상존하기도 한다. 가치간의 우열이 불확정적인 경우 언론들은 어떤 가치를 선택하여 사실을 구성하고 판단하든 관용되어야 하고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선택된 가치가 선택되지 않은 가치보다 좋다거나, 같다거나, 또는 못하다거나 하는 확정적인 판단이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롤즈(1993/1998)는 자유와 평등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문화 속에 배어 있는 보편가치라고 말하고 있다. 자유로운 조건하에서 언론이 사건을 자유라는 보편가치를 우위에 두고 보도하든,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위에 두고 보도하든, 아니면 두 입장을 균형있게 보도하든 모두 공정한 언론보도라 할 수 있다. 왜냐면 두 가치간 우열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가치가 불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인종차별보다는 평등이,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가치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합당하게 합의된 사항이다. 가치간 우열이 확정적인 경우, 우위에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편성을 결여한 가치나 가치기준이 낮은 가치들은 특수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 보편적 이해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율성이 없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허구다.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자율성에 대한 침해는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가치 논쟁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다원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율성에 근거한 공정성 논의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언론에 대한 내외적 강제가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강제는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조건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이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원칙을 위배하는 언론이나 합당한 원칙을 위배하는 사건에 침묵하는 언론은 공정한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합당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모든 언론 보도는 언론의 자유영역에 놓여 있어야 한다. 다만 언론보도가 합당한 원칙을 위배하지 않더라도 어떤 언론이 합당한 원칙을 잘 지키고 그 가치를 더 크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가는 정의로운 언론 혹은 자율적인 언론의 공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평의 영역에 남겨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가치 논쟁은 정상적인 것이며, 이 논쟁을 의도적으로 간섭 또는 방해하거나, 권력을 가진 특정세력이 어떤 것이 더 공정하다고 판결하고 다른 것을 억압할 권리는 없다.

4. 언론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와 실천

1) 언론사의 자율성과 공정성

언론의 자유는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 의견을 형성하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제약, 간섭, 장애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문종대, 1998). 여기서 제약, 간섭, 장애물은 언론행위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제약의 여건들이다. 언론은 어떤 형태의 권력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공정해질 수 있다.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같은 경제적 권력, 소유주의 간섭, 각종 사회단체의 압력, 기사 정보원으로부터의 압력 등 다양한 외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까지를 의미한다(이민웅, 1993). 언론이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적 강

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법적인 규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언론이론의 핵심이다. 따라서 언론의 공정성 조건으로서 먼저 국가에 의한 외적 강제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 의한 합법적 강제가 부당하거나 비합법적인 강제가 자행되고 있는 경우 언론은 공정성 조건아래 있지 않다.

국가에 의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경우라도 언론사가 재정적으로 취약하거나 광고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경우 금융자본이나 광고주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McQuail., 2000). 이들의 간섭에 의하여 언론사의 이익과 언론의 자유 간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자본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 있다. 즉, 자본의 이익이 언론의 자유에 우선함으로써 언론은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자본실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언론자유라는 가치간의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느 것이 더 우월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언론자유론 관점에서는 간섭이고 제약이다. 따라서 금융자본이나 광고주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자유로운 언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언론의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언론사가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우면 언론사는 자율적인가? 언론의 자율성 조건의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편적 입법자로서의 실천을 검토해야 한다. 즉, 언론사가 보편적 도덕의 관점에서 감각적 욕구나 이해관계에 좌우됨이 없이 이성의 보편적인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사가 보편적인 가치와 배치된 자사이기주의나 이해에 따라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국가의 언론사에 대한 외적·법률적 규제는 보편적 가치 실현이나 권리들 간의 상충에 대한 조정 및 침해에 대한 규제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언론사도 스스로 자기규제를 통한 보편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으로써 규제가 오히려 자율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자율적인 언론사라면 보편적 가치실현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위반이나 침해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한 부정은 이미 자율적 언론사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주관적 자기 이해관계와 타율적 강제로부터 동시에 벗어나 자기본성이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도덕적 보편성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상호 비평과 토론은 필수적이다. 자율적인 언론사는 스스로가 마치 보편적인 입법자로서 자기이해가 타인의 이해와 공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하는 보편적인 입법자여야 한다. 보편적 입법의 문제가 언론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 만큼 타인의 비평과 비판으로부터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자율적인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와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 모든 억압이나 강제에 대해서 거부해야 한다. 이에 침묵하는 언론사는 자율적인 언론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할 때만이 자율적인 언론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재권력이나 반민주적인 권력에 침묵하는 언론은 자율성을 포기한 언론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언론사,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에 침묵하는 언론사는 자율적인 언론일 수 없다.

2) 언론사 조직 내부의 자율성과 공정성

언론사가 외적 강제로부터 자유롭고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언론활동을 실현하고 있으면 언론은 자유롭고 공정한가? 언론사는 언론활동을 하는 언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다. 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언론사 조직의 강제에 의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언론사는 자율적일지 몰라도 언론인은 자율적일 수 없다.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언론사가 자율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사내의 언론인에 대한 자율성을 제약한

다면 이미 보편성을 위반하고 있다. 언론사 내적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는 언론사의 자율성은 허구다. 왜냐하면 내적 자율성이 없는 언론사의 경우 그 언론사의 보편적 가치란 특정인의 특수한 가치에 불과하며, 가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독단주의이기 때문이다.

언론기업측과 언론인 스스로 판단한 자율적 가치 간에 틈이 발생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언론기업측에 의한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합의를 끌어나갈 때 조직은 자율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사측과 언론인 간의 동의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이라 할지라도 언론사 밖의 다른 가치들과 대립될 때 역시, 상호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서로를 끊임없이 보편적 가치에 맞도록 수정해 가고 합의해가는 민주적 조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사가 자율적인 조직이기 위해서는 언론사 조직 내의 결정이 상호 참여에 의한 언론인 스스로 조직의 룰이나 가치를 자기결정할 수 있는 보편화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영과 언론활동이 분리되어야 한다. 경영이 언론활동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언론활동이 경영을 좌우하지 않도록, 언론활동과 경영활동 간의 가치조정을 위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상호 가치간의 갈등이 아니라 가치간의 조정과 화해를 통하여 조직 밖의 보편적 가치들과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3)]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언론사는 하나의 기업이다. 기업으로서 생존할 수 없다면 그 언론사의 언론활동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언론활동보다 언론기업의 존립이 우선적 목적이 된다. 그러나 언론활동에 대한 사회 보편적 가치는 특정 언론사 존립 이전에 존재한다. 언론사 존립 없이 언론활

3)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형성된 언론노조들은 언론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편집권 보장이나 독립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대체로 편집권 독립을 단체협약 속에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편집 책임자의 추천제, 직선제, 평가제 등의 도입과 편집권 행사를 감시하거나 지원키 위한 노사 동수의 공정보도위원회나 협의회의 설치 운영 등을 요구했다(이효성, 1990). 이런 제도들은 언론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 내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동이 불가능하듯이 언론활동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천 없는 언론은 사회적 존재가치가 없다. 조직유지로서의 경영활동과 자율적인 언론활동은 상호 대립되는 가치로서보다는 상호의 존립 근거이다. 따라서 언론사 존립과 자율적 언론활동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가치 영역을 언론사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인 언론인이 상호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의 여부가 언론사 조직의 자율성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언론사는 대부분 사시를 갖고 있으며, 사시는 보편적 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낸 자기결정일 뿐만 아니라 내부를 향한 자기결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시는 언론활동이 지향해야 할 목표이면서 동시에 조직을 움직이는 조직규범이다. 언론사는 자신이 내세운 보편성을 지닌 사시를 자기문제화하고 실천하는 집단이다. 사시와 위반되는 언론활동이 존재하는 경우 언론사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됨으로써 보편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런 만큼 언론사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언론사 사시가 조직 내부를 향할 때 사시는 조직 내 언론인들이 자기문제화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다. 언론사 사시를 자기문제화할 수 없는 조직 내 언론인은 자율적이지 못한 언론인이며, 언론사의 외적 강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언론사 사시의 자기문제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현실적용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차이가 사시의 본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한 관용되어야 한다.

보편적 가치로서 언론사 사시는 조직활동의 목표이다. 언론사 조직은 그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언론사의 사시가 공정성이거나 공익이라면 그런 보편적 가치가 잘 발휘될 수 있는 조직 내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편집권 독립, 옴부즈맨 제도, 언론 윤리규정, 공정보도위원회 같은 내부 심의제도 등이 이런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언론사는 자율적인 언론사라고 말할 수 없다. 사시를 자기 문제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보편적

가치와 끊임없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기이해관계의 개입을 스스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사가 내세운 보편적 가치의 자기내재화를 통한 제도들은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제도들이 권력을 독점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시되거나 강요되는 경우 그것은 이미 조직구성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내재화된 이념들을 스스로의 입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제도들은 자율적인 제도가 된다. 스스로의 입법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은 그것이 비록 보편적인 가치라 할지라도 도덕적 강제를 유발함으로써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것이 자율적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진 적극적 자기결정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3) 언론인의 자율성과 공정성

자율적이고 공정한 언론활동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언론인의 충원 시스템, 언론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재교육 시스템, 언론인의 의지의 박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언론윤리 규정 및 처벌 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언론인의 내부적이고 소극적인 장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언론활동을 모니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

언론활동에 있어서 외부적이고 소극적인 장애는 언론인이 언론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제약을 받는 경우이다. 가령 업무량의 과다로 인한 불충분한 취재, 취재장비 지원의 부실이나 취재비 부족, 취재를 위한 회사의 지원 시스템의 부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부적이고 적극적인 장애는 취재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 강제, 강압 등,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강제, 사내 윤리규정에 의한 제재 조치, 인사규정에 의한 상벌 체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규정은 공정한 언론활동이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규정들이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악법이거나 잘못된 규정인 경우라면 자율적이고 공정한 언론활동을 보장하는 기능보다 그것을 해치는 기능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법체계 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다하더라도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런 규정이나 법규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들 규정이나 법규는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기능에 충실해야한다. 이들 법규나 규정에 대한 정당성과 운영과정에 대한 공정성, 언론활동에의 보장 기능 및 언론활동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 기능 등이 잘 작동하도록 편제된 경우 이런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자율적이고 공정한 언론을 촉진하는 장치가 된다.

자유주의론자들은 장애의 부재상태만, 특히 외부적이고 적극적인 장애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그런 자유하에서 언론은 공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외적 장애, 특히 국가로부터의 장애를 거부하면서 국가의 간섭만이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언론자유가 무엇을 위한 무엇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마저 타율로 간주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언론의 자유란 외적 장애가 부재한 상태에서 모든 자기결정을 언론의 자유라고 말하며, 또한 자율적인 언론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자율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언론은 자율적인 언론이며, 자율적인 언론은 동시에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들이 내외적으로 자유로우면 자율적인 언론인으로서의 필요조건은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언론인은 자율적인 언론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주어지면 자연히 언론인은 스스로 언론활동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자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율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기결정자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율인가 타율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무엇을 가능케 하는 자율인가가 중요하다.

자율적인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감각적 욕구나 이해관계에 좌우됨없이

스스로 최고 입법자적인 의지에 따라 스스로 보편법칙을 수립하고 따를 능력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언론인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내외적 장애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정의로운 언론인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묵인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의 침해를 용인하는 것이고, 그런 용인은 스스로 자율성을 위배한다. 따라서 이런 언론인의 언론활동은 자율적일 수도 없으며 공정할 수도 없다.

4) 언론소비자의 자율성과 공정성

자율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언론사는 언론소비자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언론소비자의 자유 역시 내외적 장애로부터 자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언론소비자가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 의견을 발표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언론으로부터 적극적, 소극적 장애를 받고 있다면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소비자들이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 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접할 수 없거나,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 신념을 사회적 토론의 의제로 설정하고 싶다 할지라도 언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배제당하는 경우 언론소비자는 소극적인 장애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하지 못한 언론사는 소비자의 언론자유 실현의 적극적인 외적 장애가 된다. 이들 언론사가 언론소비자의 사상이나 의견, 신념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특히 독점적인 언론이 여론몰이를 통하여 소수의견을 도덕적으로 억압하거나, 정치권력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수립을 방해하는 경우 적극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언론사가 독과점인 경우 소수의견을 가진 국민은 이들 언론에 의해서 그들의 의견이나 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배제당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무시되거나 불평등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

언론소비자는 언론사가 보도하는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공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들 언론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보비용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언론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은 경우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을 점검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없는 보도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사실을 확인하는 독자는 거의 없으며, 이들 소비자의 합리성은 언론의 보도를 대체로 믿도록 만드는 합리적인 무지에 빠지도록 이끈다(문종대, 2001, 59쪽).

자율적이지 못한 언론사는 자연히 자신의 독자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왜곡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론에 대한 불만세력을 양산해낸다. 이들 불만세력이 왜곡된 언론에 대한 대응 사상이나 이념, 정확한 사실에 대한 추구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언론주체로서 등장하는 경우 언론자유 운동세력이 된다. 따라서 언론이 자율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면 할수록 언론자유 운동세력의 활동공간은 넓어지고, 이들이 사회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이념을 실천하는 경우 자율적인 언론실천운동으로 성장한다.

자율적인 언론실천운동은 자연히 보편적 가치에 따라 스스로 운동주체가 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를 어기는 모든 반인권적이거나 반민주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연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자율적인 언론운동과 다른 자율적인 사회운동이 상호 연대할 수 있는 접점이 있다. 단순한 언론자유운동은 다른 자율적인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자율적인 언론실천운동은 다른 정의로운 시민사회운동과 자연히 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율적인 언론사는 반인권적인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면 이것을 인권의 차원에서 보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사회적 사실이 부유한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자본가이든 노동자이든, 그들이 소수자이든 다수자이든 관계없이 누가 인권을 침해하고 누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국민의 자율적인 언론권리와 일치한다. 국민들 역시 자율적인 언론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언론자유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율적인 언론과 자율적인 국민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다.

자율적인 언론사가 독과점인 경우에도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언론자유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언론사가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한다 할지라도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해석이나 실천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독과점 언론사는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가치의 중요도를 스스로 선택해서 기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치에 대한 선택이나 중요도 판단에서 소비자 모두가 일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언론이 독과점 되면 될수록 소비자들의 가치다원성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서열이나 해석에 대한 선택을 제한당함으로써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다.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선택의 자유란 비록 자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유의 외적 통제요인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언론이 자율성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그만큼 언론자유를 제약받는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가진 자율적인 언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언론 자유는 확장된다.

5. 결론: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

자율성 논변에 기반한 언론의 공정성은 언론이 내외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언론활동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보편적 가치를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부과하고 실천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언론이 얼마나 내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가, 또는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인가는 객관적 근거들에 의해 어느 정도 검증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치들간에 합당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가치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연구의 공정성 개념에 따르면 언론은 균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공정성 이념에 헌신적인 사람들은 공정성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체제,

즉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도 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언론사들간 보도의 차이는 거의 있을 수 없다. 동일한 보도들만이 존재한다면 소수의 언론만으로 족하다. 우리는 이것을 언론의 자유라고 말하지 않으며, 또한 언론의 자유가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다.

이상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언론 공정성 개념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들과 대면하면서 불편부당하게 선택한 언론보도의 공정성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면서 자신들의 가치들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있는 언론인들이나 언론수용자들이 그것을 인정할지조차 의심스럽다. 더구나 공정성 개념이 연구자들이 구성한 것이라면 공정성에 대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더욱 의심스럽다.

공정성 기준에 대한 통일성을 모색하면 공정성의 주제적인 문제를 오해하고 만다. 실제로 똑같지 않은 언론사로 하여금, 즉 상호 가치를 달리 추구하는 언론사들로 하여금, 똑같은 기준으로 언론보도를 할 것을 강요하는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가치일원주의는 국가의 지속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바로 이때 국가권력 그 자체가 경쟁적 투쟁의 핵심대상이 된다. 다양한 집단들은 다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독점하고 나아가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언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의 핵심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성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성 판단은 가치 불확정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들에 합당한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합당한 가치들 간의 불일치를 통일시켜서는 안 되며, 그 통일은 전제주의를 꿈꾸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성 판단을 재판관의 판단처럼 취급하는 경우 언론자유의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자율성을 위반할 수 있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을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상이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다원적 가치사회에서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특정한 평가기준이 사회에 강요된다면 그것은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배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획일적인 기준은 언론 보도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함으로써 언론을 평가기준에 복종하도록 만들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공정성 평가는 종종 대단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학문적 연금술에 따라 정치적 가치들로 전환되기도 한다. 학문과 권력의 유착에 의한 언론보도의 공정성 평가에 대한 독점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언론보도의 공정성 평가에 대한 독점을 통하여 다른 공정성 평가기준들을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되며, 언론 통제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사나 언론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보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대로 보도할 수 없는 절차, 원칙,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준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정정보도 청구, 반론권 등으로 입법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언론사내 윤리 규정이나 공정보도 위원회 등 자율적인 장치들에 의해서 제시된 경우들도 있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간섭은 이런 제도적 차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언론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타인의 권리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들 제도적 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들간의 우열이 불확정적인 경우 논쟁의 영역으로 두어야 하며, 그 가치의 선택이나 제도의 선택은 자율성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공통된 이해는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비평의 입지점을 제공한다.

공정성에 대한 언론 소비자의 요구를 유발시키는 것은 권력 있는 언론이 권력 없는 자들에게 한 언론의 행위에서 비롯된다. 공정성에 대한 희망의 밑바탕에는 불공정성에 대한 체험이 자리잡고 있다. 상호 체험이 다른 경우 공정성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진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언론의 불공정성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시도이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목표는 언론의 지배가 없는 사회이다. 이것은 언론간 다양한 차이를 없애려는 희망이 아니다. 모든 언론이 똑같아야 할 필요가 없다. 언론의 수단을 통해서 여론을 통제하거나 하나의 가치를 강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서로 공정하게 평등하다.

◆ 참고문헌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나남.

강태영 (2004). 텔레비전 보도와 공정성 기준. 텔레비전 저널리즘의 공정성과 정치 세미나 발제문. 한국방송학회.

김도균 (2002). John Rawls 자유론에 있어서 분석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법철학연구』, 5권 1호, 5-34.

문종대 (1998). 언론자유의 개념정의 및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 언론학보』, 창간호.

_____ (2001). 『시장의 감옥-정책과 언론보도』. 커뮤니케이션 북스.

_____ (2004). 한국의 방송 저널리즘과 정치: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6권 1호.

유종원 (1995). 한국에서의 공정보도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3호, 137-164.

이민웅 (1996). 『한국 TV 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이장희 (2001). 칸트와 순자-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2권 2호, 207-235.

이준웅 (2004). 공정성 시비와 한국언론 : 비판적 담론 공중의 등장에 따른 언론비평의 변화. 언론광장 2004년 4월 월례 포럼 발제문.

이창현 (2004). 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현황과 문제점 방송 위원회,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 전문가 토론회.

이효성 (1990). 언론민주화 운동과 공정보도. 『저널리즘 비평』, 3권 1호 12-17.

임미원 (2002). 자율성과 자유. 『법철학연구』, 제5권 2호, 55-74.

황경식 (1995).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_____ (1991). 자유와 간섭-자율성과 선의의 간섭주의. 『철학사상』, 제1호, 55-86.

Feinberg, J. (1980). Rights, *Justice, and the Bounds of Liberty*. Princeton.

Kant, I. (1998).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Mary Gregor.Cambridge University.

MacCallum G. (1991).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 In Miller D.(Eds), Liberty (pp.100-122), Oxford.

Mendus, S. (1989). *Toleration and the Limits of Liberalism*. Macmillan.

McQuail, D. (2000). *Massion Communicion Theory*(4th). SAGE. 양승찬, 강미은, 도준호 역 (2002).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나남.

Rawls, John (1999). *A Theory of Justice*(Revised Ed). Harvard University. 황경식 역 (2003). 『정의론』. 이학사.

_____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장동진 역 (1998).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Sartre ,Jean-Paul (1956). *Existentialism in Humanism*. Walter Kautmann. ed. From Dostoevsky to Sartre. World Publishing.

(최초 투고 2004.08.30., 최종원고 제출 2004.10.11)

A Reconceptualization of Fairness in the Journalism

Focusing on the "Autonomy"

Jong-Dae Moon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Dongeui University)

Young-Tae Yoon

Full Time Instruct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Dongeui University)

An examination of the previous works regarding the concept of "fairness" in the journalism revealed that the concept is widely used but remains inadequately defined. Furthermore, there is much less agreement about the characteristics defining "fairness" in the literature. Thus it has often caused disagreement among people who have different political perspectives in the judgment about any media coverage. I suggest a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of the construct "fairness" in order to reduce the ambiguity and conflicts in the judgment of fairness among people. Most importantly, drawing on the concept of "autonomy," I attempt to fill in the gap in the model of "fairness." According to the logic of "autonomy," the "fair" press can not exist without the freedom of the press. In other words, all external/internal constraints, which intrude on the freedom of the press, encroach the "fairness" of the press. Thus, the freedom of the press is necessary condition for the fairness in the journalism. However, the freedom of the press is not enough to realize the fairness in the journalism. It needs the sufficient condition, which is the "autonomy" encompassing the ability of news organization, journalists, and audiences that they resist to any constraints against neutral value. Consequently, the emphasis on the "autonomy" which keeps neutral value perspectives will contribute to reshape the framework for evaluation of "fairness" in journalism.

Keywords : Automony of Journalism, Fairness in journalism, Freedom of the Press